

이젠 국가정책으로 노력해야 할 때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보고서



김준진 국회의원

김준진 국회의원은 여성휴게시설 및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 조사 보고서를 지난 8월 1일 제출했다. 본 보고서는 공공분야, 특히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된 것으로 앞으로 엄마젖을 먹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모유수유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모유수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85년 59%에 이르던 것이 분유회사의 광고와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2000년에는 10.2%로 떨어졌고, 2002년에는 16.3%이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와 공공분야, 정부,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치고 특히,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공공분야가 민간분야를 선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기관 및 지방청을 포함하여 대통령 경호실을 비롯한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본 조사는 공공분야, 특히,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휴게실과 모유수유·착유시설 실태를 확인하여 의원 입법활동, 관련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장, 직장협의회 적극적 요구 필요

263개의 조사 대상기관 중 여성휴게실, 모유수유·착유실 또는 양자 겸용시설 등 3개의 시설 중 하

나도 없는 기관은 모두 57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원대비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기관은 5개 기관이었다.

모유수유·착유시설이 휴게실과 분리된 경우는 13개로 전체 조사대상기관 중 5%에 불과하였고 모유수유·착유시설이 휴게실과 겸용으로 설치된 기관은 35개로 전체의 13.3%이었다. 모유수유·착유시설과 겸용시설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여성휴게실로도 사실상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 사유는 기관 내 여성의 수가 많거나, 보건복지부와 같이 부처의 목표가 모성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직장 협의회나 여직원 단체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기관장이 모성보호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경우 등으로 풀이된다. 기관장의 의지와 직장 협의회나 여직원 단체의 적극적 요구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분야의 모유수유 증진 방안

첫째, 여성휴게실의 겸용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여성휴게실 설치 기관은 전체의

68%인 179개로 여성들이 손을 씻을 공간과 모유를 저장할 냉장고만 추가로 설치한다면 모유수유 착유실로 전환또는 겸용할 수 있어, 많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중 「청사시설기준표」를 세분화하도록 한다. 여성휴게실겸모유수유·착유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모성보호 차원에서 여성 후생복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하도록 청사시설기준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도 부족한 현실에서 모유수유권을 현실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모유를 짜서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퇴근 후에 먹일 수 있도록 모유착유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모유착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규제로 작용하여 여성 고용의 기피사유가 되거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에게 부담을 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설치 강제 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개정방향은 모유착유시설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설치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모유착유시설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 민간기업 중 삼성전자나 아랜드는 적극적으로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의 호응도 좋은 것으로 보도되지만 대부분 민간기업은 시설 설치를 비용부담으로 여겨 민간기업의 설치비 보조, 무상의 설치비 대여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설치전환이나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는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육아 휴직제 정착과 산후관리 지원도 필요

모유수유·착유시설 설치를 가장 빠른 시일에 적은 비용으로 하는 방법은 기존 여성휴게실을 겸용시설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유수유·착유 수요자는 매우 한정적일 수 있고, 그 수요는 불규칙할 수 있다. 겸용 시설화하는 경우 공간을 커튼, 파티션 혹은 별도 문을 설치하는 등 설치 양식은 다를 수 있으나, 겸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여성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이 아닌 가정 내 모유수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와 아울러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일반 여성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모유수유 관련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조산사나 간호원을 배치하여 지역 내 산모의 산전관리부터 산후 관리와 함께 모유수유까지 지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비롯한 보건소 사업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